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설립자 및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해당 학교법인 임원을 역임한 자,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3월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회계 등에서”를 “회계 등에서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실 또는”으로, “30퍼센트”를 “10퍼센트”로, “5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 본문 중 “교원·직원”을 “교원·직원·조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 ④ (생략) <u>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u>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설립자 및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 상친족관계에 있는 자, 해당 학교법인 임원을 역임한 자,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는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u>3월간</u>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 ----- <u>1년간</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 ----- -----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

1. (현행과 같음)

2. -----
회계 등에서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실 또는 -----

----- 10퍼센트 -----

----- 20퍼센트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교원·직원·조교 -----

-----.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